

■ 전파법 시행령 [별표 11]

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(제90조제2항제3호 관련)

종 별	전파사용료(원)
1. 선박 및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하는 지구국	20,000
2.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	20,000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무선국(자가통신을 위하여 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한 자가 개설하는 육상이동국은 제외한다)	3,000